부칙 H

영어 미숙 정책 선언

_____ (Organization name)
는 모든 프로그램, 서비스, 활동에서 영어가 미숙(LEP)한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. LEP 해당자의 프로그램 접근은 출신국을 기준으로 한 차별을 금지한 1964년 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의 포괄 대상이며, 이 보호조항은 이후 Executive Order 13166에서 추가로 승인 되었습니다. 무료로 제공되는 문자 번역과 음성 통역은 LEP 해당자가 프로그램과 혜택, 활동에 대해 분명히 가치 있고, 정확하고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_____ (Organization name)
의 정책은 통역원으로 가족이나 친구를 사용할 경우, 그들은 해당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고 민감하며 비밀이 되는 정보를 감출 수 있으므로 자제하도록 권하는 것입니다. 저희들의 정책에 의해서 모든 LEP 해당 청구인들은 비용 지불 필요가 전혀 없는 무료 지원/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LEP 해당 청구인들에게 알려드립니다. 이 서비스를 거부하고 가족이나 친구를 이용하는 LEP 해당 청구인들은 공개 승인서에 서명해야 하며, 이 승인서는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 비밀유지가 위배될 수 있으며, 이 당사자는 부정확한 번역 또는 의사소통 실패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전가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.

본 조직은 미성년자(18세 이하)를 통역자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, 어떤 환경에서도 미성년자가 통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
본 기관은 연간 단위로 변경되는 인구학적 그리고 인구추이를 모니터하여 저희들 서비스 구역에서 변경되는 인구학적, 그리고 언어적 수요를 판단하고 확인합니다.

본 기관과 계약을 맺은 모든 위탁업무 수행자는 LEP 정책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
적용 가능한 모든 영어 미숙 정책 규칙, 규정, 안내를 준수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, 본인은 다음 사람
(Mr./Mrs.) _____ 전화 _____
를 영어 구사 미숙자 협조인으로 지정했습니다. LEP 해당 청구인은 언어 지원을 요청이나 경험한 차별 문제에 관해서 이 분과 논의하실 것을 권합니다. 차별 제소 처리 절차는 요청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.

_____ _____
SIGNATURE – Executive Director or Chief Executive Officer Date Signed